

##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0
----------	------

제출년월일 : 2005. 11 . . .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 새로운 주민소송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남소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의 채택으로 주민소송 제기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주민수를 채택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현재 주민이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을 20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개정

### 3. 근거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2005. 3. 24 법률 제7410호]

### 4. 의안전문 :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6. 기타참고자료 : 붙임

### 7. 입법예고사본 : 붙임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00명이상이어야한다.”를 “150인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200명이상이어야한다.</u>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 <u>150인이상이어야</u> <u>한다</u>

관계법령발췌

지      방      자      치      법

[2005.1.27 법률 제7360호]

第13條의4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歲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1.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타시군 주민감사청구 조례개정(예정)안

시 군	현행조례	개정조례(예정)안	비고
충주시	200명이상	150명	
제천시	200명이상	150명	
청원군	150명이상	150명	
보은군	200명이상	150명	
옥천군	200명이상	150명	
영동군	200명이상	150명	
증평군	200명이상	150명	
진천군	200명이상	150명	
괴산군	200명이상	150명	
음성군	200명이상	150명	
단양군	200명이상	100명	

※ 청주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300명이하로 개정

제천시공고 제 2005- 584 호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30 일  
제 천 시 장

1. 조례명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 새로운 주민소송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남소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의 채택으로 주민소송 제기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주민수를 채택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현재 주민이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을 20세이상 주민 150명으로 개정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 10. 20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5392, fax 640-5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등